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54호
- 나. 발 의 자 : 강 수 정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학교체육시설”, “사용료” 및 “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”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건 및 단체의 범위 규정 (안 제3조)
- 다.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(안 제4조)
- 라.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절차(안 제5조)
- 마.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제한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9. 11. 15.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였음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목적, 정의, 지원 대상 등, 지원 기준, 지원 절차, 지원금의 회수 등 본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조 : 조례의 목적 ○ 제2조 : 정의 ○ 제3조 : 지원 대상 등 ○ 제4조 : 지원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조 : 지원 절차 ○ 제6조 : 지원금의 회수 등 ○ 제7조 : 시행규칙

-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
- 제3조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나 동회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
- 제4조는 지원기준은 상·하반기 연 2회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고
- 제5조는 지원절차를
- 제6조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시 지원금의 회수와 1년간 지원 제한 규정을 두었음.

○ 조례 제정의 필요성,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하여 검토한 바,
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2호가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법제9조제5호 나목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는 “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음.

검토결과,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며,

-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 여겨지며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살펴 본 바,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, 송파구, 관악구, 광진구 등이며 4개구이며 서울 외에는 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음.

붙 임 : 관련 법령 각 1부.

국 민 체 육 진 흥 법

[시행 2019. 1. 15.] [법률 제16225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초 · 중 등 교 육 법

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61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지 방 자 치 법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